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
연 월 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근거가 법률(법률 제18797호, 시행 2022. 8. 4.)로 상향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의 세부적인 기준, 신청 서식 등 절차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국민연금공단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법률 제18646호, 시행 2022. 6 .29.)가 마련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제도 세부 운영기준 신설(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

우수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의 신청, 심사기준 및 방법, 지정공고, 이의 신청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신청시 제출 서류 부담 완화(안 제3조, 안 제4조)

국민연금공단 등에 자료제공을 요청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 관련 서류(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등 신청 시 제출 서류에서 삭제

다. 연구소 인정기준 중 인적요건(연구전담요원 자격)과 물적요건(연구 시설)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등 법령체계 정비(안 제2조, 안 제2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을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2조제1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1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업부설연구기관 등에서”를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서”로,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를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를 각각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라

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 제3호 및 제4항제3호”를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부터 제5항”을 “제1항부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기업부설 연구기관 안”을 “기업부설연구기관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7항) 중 “영 제16조의2제1항제3호”를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다목”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에 대한 기준) ① 영 제16조의2 제1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연구공간

가.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등으로서 5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
- 2)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

3)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종만 해당된다)

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하 “연구전담요원 등”이라 한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연구기자재를 설치한 후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을 확보할 것

2.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료로서 제1호의 기준에 맞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3. 부대시설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제작한 건축물과 연구전담요원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기숙사 등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주소지에 있을 것(부대시설을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제1항의 기준에 맞는 연구시설을 확보할 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내의 연구시설을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배타적 사용 권한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제10호 중 “해당한다”를 “해당하며,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벤처기업확인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를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제라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13.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제가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첨부하며,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중소기업확인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호까지”를 “제4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연구시설 외 장소에서 근무하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6제1항 및 영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제3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의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 등을 갖추어 영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기업이 여러 개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동일 회차에는 주업종을 연구하는 한 개의 기업부설연구소만 지정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제3항의 공고에 따른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만 3년 이상 연속 운영하고 있는 기업

2. 제3항의 공고에 따른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받지 않았거나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유효기간 만료가 6개월 이내인 기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로 하여금 연 2회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의 공고를 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공고 횟수를 늘리거나 줄이게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하였으면 별지 제11호 서식의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 및 신청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심사기준 및 방법) ① 영 제16조의3제2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지정예정 공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예정 공고를 하여

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예
정 공고를 7일 이상 실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서 재발급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기업연구소
의 지정을 받은 기업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
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신청하면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지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기업명, 대표자명의 변경: 지정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기업
명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기업 간의 합병 또는 양수도계약서
등

2. 기업부설연구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 : 지정서 원본,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사본

3. 원본 분실 : 사유를 기재한 사실확인서

제12조(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① 영 제16조
의5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제10조에 공고된
기간 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부터 제12조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조업 부문 세부 심사기준

구분	심 사 기 준
자가 진단 평가	1. 기업역량 A. 경영자의 혁신 의지 및 전략 1. 매출액 대비 R&D 투자금액 비중(정량) 2. 경영자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정성) B. 경영자의 역량 및 능력, 리더십 3. 경영자 기술혁신 리더십(정성) 4. 경영자의 사업 추진능력(정성) 5. 경영자의 위기관리능력(정성) 6. 경영자의 조직관리 수준(정성) C. 정부 R&D 지원 및 투자 실적 7. 외국인 투자 실적(가점) D. 외부 혁신활동 8. 외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수준(정성) E. 핵심 보유기술관련 활동 9. 핵심 보유기술 마케팅 활동(정성) F. 지식재산권 10. 지재권 권리 범위(정성) 11. 혁신성과 보호방법 및 활동 수준(정성) G. 기술개발 및 사업화 12. 신제품 기획 및 개발 능력(정성) 13. 신제품 경쟁력 분석 능력(정성) 14. 신제품 수명주기 분석 능력(정성) 15. 경쟁자 신기술 출시 대응능력(정성) H. 대외인증 및 수상 16. 대외 공정(품질) 관련 인증(정성) 17. 대외 제품 관련 인증(정성) 18. 수상실적(가점) I. 재무적 성과 19. 재무 건정성(부채비율)(가점) 20. 사업화 매출에 의한 자금 유동성(정성) J. 시장경쟁력 21. 시장경쟁력 향상도(정성)

2. 연구소 역량

A. 경영자의 혁신 의지 및 전략

- 22. 기술개발 중장기 전략 및 목표 수준(정성)
- 23. 중장기 사업 및 신기술 개발계획(정성)

B. 인적자원

- 24. R&D 인력비중(정량)
- 25. 고급인력(석사이상) 비율(정량)
- 26. 연구개발인력의 신기술 개발 추진능력(정성)
- 27. 체계적 정보검색 및 분석능력(정성)
- 28. 연구개발조직 및 인력 관리 수준(정성)

C. 연구개발 장비, 표준화 등 연구개발환경

- 29. R&D 장비 투자비중(정량)
- 30. 연구개발금액(정량)
- 31.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정성)
- 32. 기술표준화 수준(정성)
- 33. 연구개발환경 수준(정성)

D. 정부 R&D 지원 및 투자 실적

- 34. 정부 R&D 지원제도 수혜 실적(가점)

E. 내부 혁신활동

- 35. 연구개발인력 1인당 연구개발비(정량)
- 36. 외부 연구개발비 비중(정량)
- 37. 기술혁신 수행능력(정성)
- 38. 연구개발 활동의 디지털 PMS 도입(가점)
- 39. 기술개발 외부환경 분석(정성)
- 40. 기술개발 내부자원 분석(정성)

F. 외부 혁신활동

- 41. 공동연구개발 형태(공동-위탁 등)(정성)
- 42. 외부 협력기관 구성(복합-단순 등)(정성)

G. 핵심 보유기술 관련 활동

- 43. 핵심 보유기술 수준(정성)
- 44. 핵심 보유기술 개발 인력 구성(정성)
- 45. 핵심 보유기술 개발 환경 수준(정성)
- 46. 핵심기술 보완능력(정성)
- 47. 신산업 관련 기술 개발 능력(정성)
- 48. 신산업 관련 기술 활용 능력(정성)

H. 지식재산권

- 49. 보유 산업재산권 금액(정량)

I. 기술개발 및 사업화

- 50. 기술개발 및 사업화 수준(정성)
- 51. 경쟁자 신제품 및 신사업 출시 대응능력(정성)

J. 대외인증 및 수상

- 52. 대외기술인증(정량)

K. 기술 경쟁력

- 53. 기술이전 실적(가점)
- 54. 기술경쟁력 향상도(정성)
- 55. 기술변화 행동능력 향상(정성)

구분	심 사 기 준
발표 심사	<정성평가> 1. 연구소·기업 역량 A. 경영자 기술혁신 리더십 1. 기술혁신 관련 사업화 의지 정도 2. 기술혁신 동기부여 수준 B. 중장기 전략·목표 수준 3. 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수준 4. 전략 및 목표의 실현 가능성 정도 C. 내부자원 분석능력 5. Technology Tree, 기술 로드맵 구성 수준 6. 자사 보유기술에 대한 SWOT 분석 수준 7. 특허 MAP 분석 능력 수준 2. 핵심 보유기술 역량 A. 연구개발인력 1. 핵심보유기술 개발 인력 비중 2. 핵심보유기술 개발 인력 수준 3. 핵심보유기술 개발 인력 증가율 B. 연구개발 장비 및 환경 4. 연구개발 장비 구성 수준 5. 핵심보유기술 개발 프로젝트 예산 및 기간 6. 인센티브, 직무발명보상제 등 연구원 보상 시스템 수준 C. 기술혁신 수행능력 7. PMS, ERP 등 연구개발 프로젝트 전산관리 시스템 수준 8. 연구개발 인력 및 설비 등 자원관리 수준 9. 외부와 협력 등 오픈 이노베이션 노력 정도 D. 핵심 보유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10. 핵심보유기술 관련 지재권 보유 건수 11. 핵심보유기술 관련 지재권 권리 범위 등 질적 수준 E. 기술개발·사업화 (예상) 실적 12. 핵심보유기술 관련 기술개발·사업화 실적 13. (지원 시) 성공이 예상되는 기술개발·사업화 실적 14. (지원 시) 사업화에 의해 창출이 예상되는 일자리 수 F. 핵심 보유기술의 기술 경쟁력 15. 원가절감 수준 향상 정도 16. 해당 제품 및 관련제품의 성능 향상 정도 17. 기술 자립도 향상 정도 G. 핵심 보유기술에 의한 시장 경쟁력 18. 시장선점 가능성 제고 정도 19. 매출액 성장 가능성 제고 정도 20. 가격 경쟁력 성장 가능성 제고 정도

현장 심사	<현장평가> A. 핵심보유기술에 대한 연구활동 수행여부 1. 핵심보유기술 개발현황 2. 핵심보유기술 개발방법 3. 기술개발을 위한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4. 기술의 신뢰도(산업재산권, 국내외 기술인증 등) B. 핵심보유기술과 관련된 연구인력 현황 5. 연구인력 보유 적정성(인사발령서, 관련분야 학위 보유) 6. 연구인력의 실제 연구활동 수행여부(연구개발 이외 활동 겸직 여부 등) C. 핵심보유기술 연구환경 7. 핵심보유기술과 관련 개발환경(시험기자재, 시험장비 보유) 8. 연구공간의 적정성(독립된 연구공간 보유) D. 기타 9. 핵심보유기술과 관련된 기술경쟁력 10. 핵심보유기술의 기술보호를 위한 활동
종합 심사	<종합평가> A. 지정의 적합성(지속적인 가치창출 가능 여부 등) B. 지정의 필요성(지정에 따른 파급효과 등)

□ 서비스업 부문 세부 심사기준

구분	심 사 기 준
자가 진단 평가	1. 기업역량 A. 경영자의 혁신 의지 및 전략 1. 매출액 대비 R&D 투자금액 비중(정량) 2. 경영자의 기술(서비스)혁신 및 사업화 의지(정성) B. 경영자의 역량 및 능력, 리더십 3. 경영자 기술(서비스)혁신 리더십(정성) 4. 경영자의 사업 추진력(정성) 5. 경영자의 위기관리능력(정성) 6. 경영자의 조직관리 수준(정성) C. 정부 R&D 지원 및 투자 실적 7. 외국인 투자 실적(가점) D. 내부 혁신활동 8. 혁신방법론의 사내 도입 수준(정성) E. 외부 혁신활동 9. 외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수준(정성) F.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관련 활동 10.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마케팅 활동(정성) G. 지식재산권 11. 지적재산권 권리 범위 및 활동 수준(정성) 12.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식재산권 구매 활동(정성) H. 기술(서비스)개발 및 사업화 13. 신서비스 기획 및 개발 능력(정성) 14. 신서비스 경쟁력 분석 능력(정성) 15. 신서비스 수명주기 분석 능력(정성) 16. 경쟁자 신서비스 출시 대응능력(정성) 17. 연구개발에 의한 서비스 고부가가치화 성과(정성) I. 대외인증 및 수상 18. 대외수상실적(가점) J. 재무적 성과 19. 외부기관의 R&D 투자 실적(가점) 20. 사업화 매출에 의한 자금 유동성(정성) K. 시장경쟁력 21. 시장경쟁력 향상도(정성)

2. 연구소 역량

A. 경영자의 혁신 의지 및 전략

- 22. 기술(서비스)개발 중장기 전략 및 목표 수준(정성)
- 23. 중장기 사업 및 신기술(서비스) 개발계획(정성)

B. 인적자원

- 24. R&D 인력비중(정량)
- 25. 고급인력(석사이상) 비율(정량)
- 26. 연구개발인력의 신기술(서비스) 개발 추진능력(정성)
- 27. 체계적 정보검색 및 분석능력(정성)
- 28. 연구개발조직 및 인력 관리 수준(정성)

C. 연구개발 환경

- 29. 프로젝트 자원관리 및 시설장비 기반 장치 보유(정량)
- 30. 연구개발금액(정량)
- 31.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수준(가점)
- 32. 새로운 혁신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수준(정성)
- 33. 기술(서비스) 표준화 수준(정성)
- 34. 연구개발환경 수준(정성)

D. 정부 R&D 지원 및 투자 실적

- 35. 정부 R&D 지원제도 수혜 실적(가점)

E. 내부 혁신활동

- 36. 연구개발인력 1인당 연구개발비(정량)
- 37. 연구개발비 중 교육훈련비 투자 비중(정량)
- 38. 기술(서비스)혁신 수행능력(정성)
- 39. 기술개발 외부환경 분석(정성)
- 40. 기술개발 내부자원 분석(정성)

F. 외부 혁신활동

- 41. 공동연구개발 형태(공동-위탁 등)(정성)
- 42. 외부 협력기관 구성(복합-단순 등)(정성)

G.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관련 활동

- 43.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수준(정성)
- 44.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개발 인력 구성(정성)
- 45.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개발 환경 수준(정성)
- 46. 핵심기술(서비스) 보완능력(정성)
- 47. 신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개발 능력(정성)
- 48. 신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활용 능력(정성)

H. 지식재산권

- 49. 기업 보유 지식재산권 역량(정량)

I. 기술(서비스)개발 및 사업화

- 50. 기술(서비스)개발 및 사업화 수준(정성)
- 51. 경쟁자 신제품 및 신사업 출시 대응능력(정성)

J. 대외인증 및 수상

- 52. 대외 서비스 인증(정량)

K. 기술(서비스) 및 시장 경쟁력

- 53. 실시권, 상표권 등 권리 이전 실적(가점)
- 54. 기술(서비스) 경쟁력 향상도(정성)
- 55. 기술(서비스)변화 행동능력 향상(정성)

구분	심 사 기 준
발표 심사	<정성평가> 1. 연구소·기업역량 A. 경영자 기술(서비스)혁신 리더십 1. 기술(서비스) 혁신 관련 사업화 의지 정도 2. 기술(서비스)혁신 동기부여 수준 B. 중장기 전략·목표 수준 3. 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수준 4. 전략 및 목표의 실현 가능성 정도 C. 내부자원 분석능력 5. 기술(서비스) 로드맵 구성 수준 6. 자사 보유기술에 대한 SWOT 분석 수준 2.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역량 A. 연구개발인력 1.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개발 인력 비중 2.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개발 인력 수준 3.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개발 인력 증가율 B. 연구개발 장비 및 환경 4. 연구개발을 위한 SW 및 프로그램 구성 수준 5.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개발 프로젝트 예산 및 기간 6. 인센티브, 직무발명보상제 등 연구원 보상 시스템 수준 C. 기술(서비스)혁신 수행능력 7. PMS, ERP 등 연구개발 프로젝트 전산관리 시스템 수준 8. 연구개발 인력 및 인프라 등 자원관리 수준 9. 외부와 협력 등 오픈 이노베이션 노력 정도 D.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관련 지적재산권 10.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관련 지적재산권 보유 건수 11.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관련 지적재산권 권리 범위 등 질적 수준 E. 기술개발·사업화 (예상) 실적 12.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관련 기술개발·사업화 실적 13. (지원 시) 성공이 예상되는 기술개발·사업화 실적 14. (지원 시) 사업화에 의해 창출이 예상되는 일자리 수 F. 핵심 보유기술(서비스)의 기술 경쟁력 15. 원가절감 수준 향상 정도 16. 해당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의 성능 향상 정도 G. 핵심 보유기술(서비스)에 의한 시장 경쟁력 17. 시장선점 가능성 제고 정도 18. 매출액 성장 가능성 제고 정도 19. 가격 경쟁력 성장 가능성 제고 정도

현장 심사	<현장평가> A. 핵심보유기술(서비스)에 대한 연구활동 수행여부 1.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개발현황 2.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개발방법 3. 기술(서비스)개발을 위한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4. 기술(서비스)의 신뢰도(지식재산권, 국내외 서비스 인증 등) B. 핵심보유기술(서비스)과 관련된 연구인력 현황 5. 연구인력 보유 적정성(인사발령서, 관련분야 학위 보유) 6. 연구인력의 실제 연구활동 수행여부(연구개발 이외 활동 겸직 여부 등) C. 핵심보유기술(서비스) 연구환경 7. 핵심보유기술(서비스) 관련 개발환경(관련 SW, 설비 및 장비 등 보유) 8. 연구공간의 적정성(독립된 연구공간 보유) D. 기타 9. 핵심보유기술(서비스)과 관련된 경쟁력 및 시장 역량 10. 핵심보유기술(서비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
종합 심사	<종합평가> A. 지정의 적합성(지속적인 가치창출 가능 여부 등) B. 지정의 필요성(지정에 따른 파급효과 등)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기업)	① 기업체명 (홈페이지:)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종(KSIC)	
			④ 주요 생산품	
	⑤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내국인/외국인
			전화번호	
			이메일	
	⑥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⑦ 매출액(년도) 백만원			
⑧ 종업원 수(년) 명		⑨ 개업 연월일(년 월 일)		
⑩ 기업 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기업 [] 소기업 [] 벤처기업(년 월 일)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 그 밖의 유형		

기업부설 연구기관	⑪ 기업부설 연구기관명		⑫ 설립 연월일	
	⑬ 기업부설 연구기관장	성명 직위	생년월일	근무 형태 []전임 []겸임
			이메일	
	⑭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⑮ 신청분야	[]과학기술	[]서비스	
	⑯ 연구분야	[]건설 []금속 []기계 []생명과학 []섬유 []소재 []식품 []전기전자 []화학 []환경 []산업디자인 []기타 KSIC: KSIC: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 []운수 []교육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 []도매 및 소매 []숙박 및 음식점 []금융 및 보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기타	
	⑰ 주 연구 내용			
	⑱ 연구개발 인력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⑲ (연구기관 내 위치한) 연구기자재 종	
⑳ 연구공간	[] 건물 전체 [] 독립공간 [] 분리구역 [] 소유 건물 m ² [] 소유 m ² [] 소유 m ² [] 임대 건물 m ² [] 임대 m ² [] 임대 m ²			

㉑ 연구개발투자 (년도)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인건비	백만원
	연구시설비	백만원
	그 밖의 연구개발투자액	백만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기업대표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 서류	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연구기자재 현황(별지 제3호서식) 1부 3.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회사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조직도 1부 6.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비 명세서 1부(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합니다) 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합니다) 9.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⑯의 신청분야가 서비스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합니다) 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1. 연구원·교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해당합니다) 1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제라목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첨부합니다) 1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제가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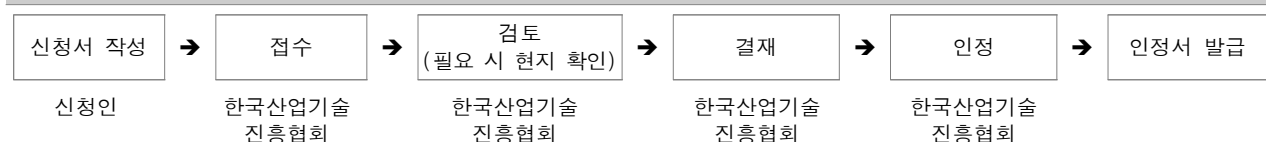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신청서 작성방법

- ③의 "업종"란에는 해당 기업의 주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KSIC코드)에 따라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 ④의 "주요 생산품"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품, 서비스를 적습니다(예, 자동차 타이어, 핸드폰, 온라인게임, 조경설계 등).
- ⑥의 "주소"란에는 해당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소재지의 번지수와 빌딩명,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
- ⑦의 "매출액"란은 신청일 기준 최종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준연도를 적습니다.
- ⑧의 "종업원 수"란에는 가장 최근의 상시 종업원 수를 적습니다(일용직은 제외합니다).
- ⑨의 "개업 연월일"란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
- ⑩의 "기업 유형"란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8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일 경우 유효기간을 적습니다.
- ⑫의 "설립 연월일"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설립한 날짜를 적습니다.
- ⑭의 "소재지"란에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의 번지수와 빌딩명,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
- ⑮의 "신청분야"란은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연구개발활동에 따라 해당 분야를 선택합니다.
- ⑯의 "연구분야"란은 ⑮의 신청분야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분야를 선택합니다. 다만, ⑯에서 "서비스"를 선택한 기업은 해당 기업의 주 업종과 관련한 연구 분야를 선택합니다.
- ⑰의 "주 연구 내용"란에는 구체적인 연구 내용의 대표적인 활동을 적습니다.
- ⑱의 "연구개발인력"란에는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의 직원 수를 적습니다.
- ⑲의 "연구기자재"란에는 연구기자재 현황(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기자재 수를 적습니다.
- ⑳의 "연구공간"란에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아래 형태에 따라 "건물 전체", "독립공간", "분리구역"을 선택하고, 자사 소유 건물 일 경우에는 "소유", 임대건물일 경우에는 "임대"를 선택합니다.
 - 건물 전체: 건물 전체를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 사용하는 경우(건물의 전체 연면적 기재)
 - 독립공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고 사방이 고정된 벽체로 천장까지 구분한 공간
 - 분리구역: 칸막이 등으로 연구공간을 구분한 경우
 ※ 다만, 분리구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서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만 선택합니다.
- ㉑의 "연구개발투자"란에는 신청한 해부터 향후 1년간의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투자계획을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인건비", "연구시설비", "그 밖의 연구개발투자액"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신청서류 처리절차



[] 기업부설 연구기관

[]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연구개발인력 현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개 황

구 분	박 사	석 사	학 사	전문학사	기 타	계
① 연구전담요원						
② 연구보조원						
③ 연구관리직원						
계						

2. 연구원 현황

④ 구분	⑤ 일련 번호	⑥ 직위	⑦ 성명	⑧			⑨ 소속 부서	⑩ 최종 학교 (전공학과)	⑪ 최종 학위 (학위번호)	⑫ 병적 사항	⑬ 발령일	⑭ 신규 편입 여부	⑮ 연구시설 내 근무 여부
				생년 월일	성별	내/외 국인							
⑯ 기업부설 연구기관장												[] 전임 [] 겸임	[] 여 [] 부
⑰ 연 구 전 담 요 원													
⑱ 연 구 보 조 원													
⑲ 연 구 관 리 직 원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인력 현황 작성방법

1. ① 및 ⑰의 “연구전담요원” 란에는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적습니다.
2. ② 및 ⑱의 “연구보조원” 란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실험·검사 및 측정 등 연구보조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적습니다(연구보조원 보유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3. ③ 및 ⑲의 “연구관리직원” 란에는 연구행정, 연구지원 사무 등 연구관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적습니다(연구관리직원 보유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4. ⑥의 “직위” 란에는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부여된 직위를 적습니다(예 :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원급 등).
5. ⑨의 “소속 부서” 란에는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의 소속 부서명(예 : 자동화제어연구실, 연구1실 등)을 적습니다. 다만,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가 세부 부서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면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습니다.
6. ⑩의 “최종 학교” 및 ⑪의 “최종 학위” 란에는 최종 학교명과 전공학과명 및 최종 취득학위와 학위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전문대 졸업자나 국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학위취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졸업연도를 적고,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최종 학교” 란에 자격증 종류(○○○○기사, ○○○○산업기사 등)를, “최종 학위” 란에 자격증번호를 적습니다.
7. ⑫의 “병적사항” 란에는 병역필, 병역면제, 병역특례, 특례필 등으로 적습니다(여자의 경우는 “해당 사항 없음” 으로 기입합니다).
8. ⑬의 “발령일” 란에는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로 발령받은 날짜를 적습니다(회사 입사일이 아닙니다).
9. ⑭의 “신규 편입 여부” 란에는 변경신고인 경우 새로 편입된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만 “신규” 로 적습니다(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10. ⑮의 “연구시설 내 근무여부” 란에는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의 연구시설 내 근무여부를 표시합니다.(자택 등 연구시설 외에서 근무할 경우 “부” 에 표시)
11. ⑯의 “기업부설 연구기관장” 란은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만 적습니다.

※ 적을 난이 부족할 경우 별첨이 가능합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기업)	① 기업체명 (홈페이지 :)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종(KSIC)	
			④ 주요 생산품	
	⑤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내국인/외국인
			전화번호	
			이메일	
	⑥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⑦ 매출액(년도) 백만원			
⑧ 종업원 수(년)		명		⑨ 개업 연월일(년 월 일)
⑩ 기업 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기업 [] 소기업 [] 벤처기업(년 월 일)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 그 밖의 유형		

기업의 연구 개발 부서	⑪ 연구개발부서명		⑫ 설립 연월일		
	⑬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⑭ 신청 분야	[] 과학기술		[] 서비스	
	⑮ 연구 분야	[] 건설 [] 금속 [] 기계 [] 생명과학 [] 섬유 [] 소재 [] 식품 [] 전기전자 [] 화학 [] 환경 [] 산업디자인 [] 기타		[]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 부동산 및 임대 [] 운수 [] 교육서비스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 [] 도매 및 소매 [] 숙박 및 음식점 [] 금융 및 보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 기타	
	KSIC:		KSIC:		
	⑯ 주연구내용				
	⑰ 연구개발인력	연구전담요원 명	연구보조원 명	연구관리직원 명	⑱ (연구개발부서 내 위치한) 연구기자재 종
	⑲ 연구공간	[] 건물 전체 [] 독립공간 [] 분리구역			
	[] 소유 건물 m ²		[] 소유 m ²		[] 소유 m ²
[] 임대 건물 m ²		[] 임대 m ²		[] 임대 m ²	

⑳ 연구개발투자 (년도)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인건비	백만원
	연구시설비	백만원
	그 밖의 연구개발투자액	백만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하

첨부 서류	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연구기자재 현황(별지 제3호서식) 1부 3.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회사 조직도 1부 6.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7.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⑭의 신청분야가 서비스인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만 해당합니다) 1부 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제가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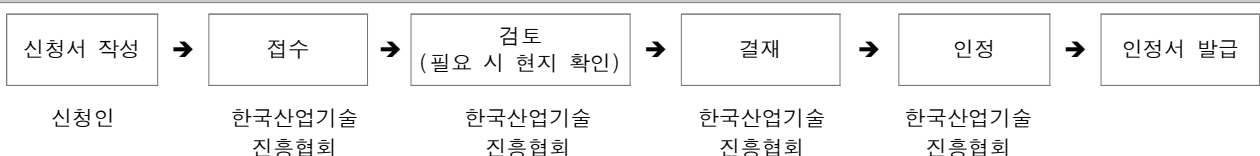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신청서 작성방법

- ③의 "업종"란에는 해당 기업의 주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KSIC코드)에 따라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 ④의 "주요 생산품"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품, 서비스를 적습니다(예: 자동차 타이어, 핸드폰, 온라인게임, 조정설계 등).
- ⑥의 "주소"란에는 해당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주 소재지의 번지수와 빌딩명,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
- ⑦의 "매출액"란은 신고일 기준 최종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준연도를 적습니다.
- ⑧의 "종업원 수"란에는 가장 최근의 상시 종업원 수를 적습니다(일용직은 제외합니다).
- ⑨의 "개업 연월일"란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
- ⑩의 "기업 유형"란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8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일 경우 유효기간을 적습니다.
- ⑫의 "설립 연월일"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설립한 날짜를 적습니다.
- ⑬의 "소재지"란은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하고 있는 주소의 번지수와 빌딩명,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
- ⑭의 "신청 분야"란은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연구개발활동에 따라 해당 분야를 택합니다.
- ⑮의 "연구 분야"란은 ⑭의 신청 분야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분야를 선택합니다(신청분야 내 복수 선택 가능). 다만, ⑮에서 "서비스"를 선택한 기업은 해당 기업의 주 업종과 관련한 연구 분야를 선택합니다.
- ⑯의 "주요연구내용"란에는 구체적인 연구 내용의 대표적인 활동을 적습니다.
- ⑰의 "연구개발인력"란에는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의 직원 수를 적습니다.
- ⑱의 "연구기자재"란에는 연구기자재 현황(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기자재 수를 적습니다.
- ⑲의 "연구공간"란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아래 형태에 따라 "건물 전체", "독립공간", "분리구역"을 선택하고 각각 자사 소유 건물일 경우에는 "소유", 임대건물일 경우에는 "임대"를 선택합니다.
 - 건물전체: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건물의 전체 연면적 기재)
 - 독립공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고 사방이 고정된 벽체로 천장까지 구분한 공간
 - 분리구역: 칸막이 등으로 연구공간을 구분한 경우
 ※ 다만, 분리구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로서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만 선택합니다.
- ⑳의 "연구개발투자"란에는 신청한 해부터 향후 1년간의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투자계획을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인건비", "연구시설비", "그 밖의 유형"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신청서류 처리절차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변경 10일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일		
기업체	명 칭									
	소재지	주소(빌딩/호실)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사업자번호									
	기업 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벤처기업(년 월 일)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그 밖의 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벤처기업(년 월 일)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그 밖의 유형				
업종(KSIC) (주 생산품)		()			()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명 칭									
	신청 분야		[]과학기술 []서비스			[]과학기술 []서비스				
	연구 분야									
	소재지	주소(빌딩/호실)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업 부설 연구 소장	성 명								
		직 위								
		전임 여부	[]전 임 []겸 임			[]전 임 []겸 임				
	연구전담 요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내 용		변 경 후			
			연구시설 내 근무		전 입	전 출	연구시설 내 근무			
			박 사	명	명	명	명	명	명	
			석 사	명	명	명	명	명	명	
			학 사	명	명	명	명	명	명	
			전문대	명	명	명	명	명	명	
		기 타	명	명	명	명	명	명		
		소 계	명	명	명	명	명	명		
연구보조원		명	명	명	명	명	명			
연구관리직원	명	명	명	명	명	명				
계	명	명	명	명	명	명				
연구기자재		총 종		총 종						
연구공간	유 형		전용면적	유 형		전용면적				
	[]소유 []임대	[]건물 전체 []독립공간 []분리구역	m²	[]소유 []임대	[]건물 전 체 []독립공 간 []분리구 역	m²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변경신고 사항		첨부서류
기 업 체	명 칭	▷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소 재 지	▷ 변경 후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대 표 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기업 유형	▷ 기업 유형(대, 중견, 중, 소) 변경 확인서류 사본,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업 종	▷ 변경 업종의 KSIC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기업부설 연구 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명 칭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출입구 현판 사진
	연구 분야	▷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및 연구기자재 현황(별지 제3호서식) 각 1부 ▷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소 재 지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기업부설연구소장	▷ 변경 후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근무 중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력 모두 기재)
	연구개발인력	
	연구공간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변경 전 사항은 전부 적고 변경 후 사항은 해당 사항만 적습니다.
2. 주소지가 빌딩 내에 있는 경우 빌딩명과 호실까지 적습니다.

우수 기업연구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신청인 (기업)	기업명		대표자	
	설립일		업종	
	주 생산품		주 연구분야	
	종업원 수		연구원 수	
	기업 유형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사) (연구소)		상장여부	
지정대상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소명	연구소 인정번호		연구소 인정일자
핵심 보유 기술	핵심보유 기술의 명칭		신청분과 [] 위원회	
	기술핵심 단어			
업무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전화	핸드폰	이메일	
주요 사업				
회사 연혁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업명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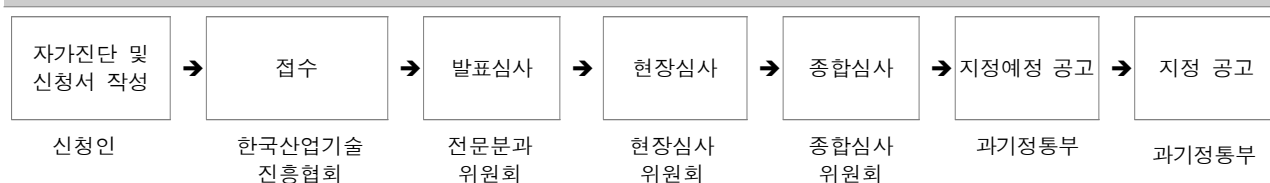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하

첨부 서류	1.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설명서(별지 제10호서식) 1부 2. 표준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3부(최근 3개년) 3.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조회 결과 3부(최근 3개년) 4.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인력현황 3부(최근 3개년) 5. 본사 사업자등록증 1부 6. 특허등록 원부 (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합니다) 7. 정부부처 포상 및 인증 증빙서류 (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합니다) 8.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소기업기준검토표 1부 (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합니다) 9. 자가진단 확인용 증빙서류 (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신청서 작성방법

- "업종"란에는 해당 기업의 주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KSIC코드)에 따라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 "주 생산품"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품, 서비스를 적습니다(예, 자동차 타이어, 핸드폰, 온라인게임, 조경설계 등).
- "주 연구분야"란에는 구체적인 연구 내용의 대표적인 활동을 적습니다.
- "종업원 수"란에는 가장 최근의 상시 종업원 수를 적습니다(일용직은 제외합니다).
- "연구원 수"란에는 접수일 기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된 연구전담요원 수를 기재합니다. (보조원, 관리직원은 제외)
- "기업 유형"란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8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 "주소"란의 "(본사)"에는 해당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재지의 번지수와 빌딩명,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 "(연구소)"에는 현재 신고되어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기재된 소재지를 적습니다.
- "상장여부"란은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된 여부를 적습니다.
- "연구소명"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기재된 연구소명을 적습니다.
- "연구소 인정번호"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기재된 인정번호를 적습니다.
- "연구소 인정일자"란에는 최초 인정받은 인정일자를 적습니다.
- "핵심보유 기술의 명칭"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 명칭을 적습니다.
- "신청분과"란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 운영 요령」 별표에 따른 전문분과위원회 중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활동 분야에 해당하는 1개를 선택합니다.(탄소중립분야 연구개발활동 여부 추가 선택)
- "기술핵심 단어"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핵심 단어를 적습니다.
- "주요사업"란에는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적습니다.
- "회사역력"란은 기업의 창립일로부터 주요 연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

☐ 제조업 부문 신청기업 설명서

1. 주요 재무제표 및 연구개발 실적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20 년*	20 년*	20 년*
재 무 상 태	①총자산(원)			
	②총부채(원)			
	③부채비율(%)			
	④보유 산업재산권 금액(원)			
연 구 개 발 & 주 요 실 적	⑤매출액(원)			
	⑥연구개발비(원)			
	⑦외부 연구개발비 금액(원)			
	⑧연구장비 투자금액(원)			
	⑨종업원수(명)			
	⑩연구개발 전담요원수(명)			
	⑪연구전담요원 중 석박사수(명)			
	⑫정부포상(수상)실적			
	⑬대외기술인증실적			

상기 작성된 내용에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공인회계사(세무사)

(인)

년 월 일

* 주요 재무제표 및 연구개발 실적은 신청일 기준 과거 3년간의 실적을 기록함

※ ①~⑧ 항목은 회계결산 기준이며 직전년도 결산 미확정시, 전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기재
⑨~⑬ 항목은 각 연도 12월31일 기준

신청서 작성방법

1. 재무상태

- ① 총자산 : 각 연도의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작성
- ② 총부채 : 각 연도의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작성
- ③ 부채비율 : 재무상태표의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
- ④ 보유 산업재산권 금액 : 각 연도의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작성

2. 손익계산

- ⑤ 매출액 : 각 연도의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작성
- ⑥ 연구개발비 : 각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무형자산(개발비) 증감명세서 기준으로 작성
 - 연구개발비 : 재무상태표상 무형자산 개발비(당해연도 발생분 기준) + 손익계산서상 연구비 또는 경상개발비(판매비와 관리비 또는 제조경비)
- ⑦ 외부 연구개발비 : 각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무형자산(개발비) 증감명세서 기준, 외부에서 투입된 금액 기준으로 작성
- ⑧ 연구장비 투자금액 : 각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무형자산(개발비) 증감명세서 기준, 연구장비 관련 투자 금액 기준으로 작성

3. 연구개발

- ⑨ 종업원수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조회를 통해 작성(각 연도 12월31일 기준)
- ⑩ 연구전담요원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작성(각 연도 12월31일 기준)
 - ※ R&D인력 작성시 연구보조원/관리직원은 제외
- ⑪ 연구전담요원 중 석박사수 : ⑩에 기재한 R&D인력 중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보유한 인력의 수를 작성(각 연도 12월31일 기준)
- ⑫ 정부포상(수상) 실적 : 해당연도에 신청기업이 정부로부터 수여받은 포상 건수를 작성
 - 장관상, 국무총리상, 대통령표창 및 훈포장만 포함(협회장상 등은 제외)
- ⑬ 대외기술인증실적 : 신청시점 기준, 유효한 대외 기술관련 인증 건수를 작성

※ ①~⑧ 항목은 반드시 세무대리인 또는 회계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작성할 것

2. 기술혁신 추진전략 및 역량

구분	주요내용
① 경영자 기술혁신 리더십	기술혁신에 대한 경영자의 의지 및 방침이 정립되어 있는지 등을 설명
② 기술혁신 중장기전략수립	중장기(향후 3~5년) 기술개발의 세부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지와, 실현 가능성, 적정한 계획인지 여부 등을 설명
③ 개발환경 및 연구장비 보유 수준	사내 창조적 개발환경의 수준은 어떠한지를 설명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험장비 보유 현황에 대해 설명
④ 연구인력 관리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관리시스템 등을 설명 -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 및 보유를 위한 기업차원의 활동 - 연구인력 규모 및 구성의 우수성
⑤ 기술혁신 수행능력	신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체내 기술혁신 수행 능력 등을 설명 - 연구 및 생산 시설의 보유 및 외부활용 포함(시설의 보유 및 외부활용 전략, 외부 시설의 활용체계와 성과 등)
⑥ 기술축적 및 활용시스템	보고서, 분석자료, 사업계획서 등의 문서화/자료화 및 개발에 참여한 인력의 노하우 관리, 매뉴얼, 데이터베이스화 등의 형태로 관리 활용하는 실태 등을 설명
⑦ 기술보호 수준	기술보안수준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정도를 설명 내부 보안관리 규정 보유(제·개정), 규정과 연계한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보안전담 조직 또는 인력보유,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정기수행 실시 여부 등 포함
⑧ 지적재산권 경쟁력수준	기술혁신의 결과로 출원 또는 지적재산권의 경쟁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 - 보유 또는 개발기술의 우수성 및 활용 성과 등 포함
⑨ 사업화 추진역량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기술 및 품질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 등을 설명
⑩ 기술경쟁력 및 시장경쟁력 향상도	기술혁신의 결과로 경쟁력 향상 정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등을 설명 기술혁신의 결과로 시장경쟁력 향상 정도는 어떻게 예상될지 등을 설명

3. 연구개발 개요서

- ① 핵심보유기술 및 기술경쟁력
(작성내용은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예정 공고시에 활용 예정)

- ②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에 따른 경제적 성과내용

- ③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한 전략 및 내용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수행한 업무를 중심으로 작성)

- ④ 지난 3년간 수행한 대표적인 R&D과제
(개수 제한 없음, 정부과제 또는 자체과제도 무관, 현재 수행중인 과제도 작성 가능)

연 도	연구 과 제 명	연구 내 용	연구개발비 (백만원)	관련 제품	관련 매출액 (백만원)

4. 대표이사 및 핵심연구인력

대표이사 주요 경력	■ ■ ■ ■		
핵심연구인력 약력(4명 이내)			
	■ ■ ■ ■		■ ■ ■ ■
	■ ■ ■ ■		

5. 대표 제품(기재할 제품이 많을 시 표를 추가하여 작성)

1	제품명		품목구분		
	출시일		년 매출액		
	제품 경쟁력 및 장점	■ ■ ■ ■ ■ ■ ■			제품사진

6. 산업재산권 등록 현황

구 분	명 칭	발명자	국 명	등록일	등록번호	공동출원 기 관

※ 해당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반드시 첨부

7. 정부부처 포상 및 인증 현황

구 분	명 칭	발행처	일 자
정부포상			
정부인증			

※ 해당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반드시 첨부

□ 서비스업 부문 신청기업 설명서

(10쪽 중 제6쪽)

1. 주요 재무제표 및 연구개발 실적

※ 제7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20 년*	20 년*	20 년*
재무 상태	①총자산(원)			
	②매출액(원)			
연구 개발 & 주 요 실 적	③연구개발비(원)			
	④종업원수(명)			
	⑤연구개발 전담요원수(명)			
	⑥연구전담요원 중 석박사수(명)			
	⑦연구개발 인력의 교육훈련 투자금액(원)			
	⑧대외기술인증실적			
	⑨정부포상(수상)실적			

상기 작성된 내용에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공인회계사(세무사)

(인)

년 월 일

* 주요 재무제표 및 연구개발 실적은 신청일 기준 과거 3년간의 실적을 기록함

※ ①~⑧ 항목은 회계결산 기준이며 직전년도 결산 미확정시, 전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기재
⑨~⑬ 항목은 각 연도 12월31일 기준

신청서 작성방법

1. 재무상태

- ① 총자산 : 각 연도의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작성

2. 손익계산

- ② 매출액 : 각 연도의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작성
- ③ 연구개발비 : 각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무형자산(개발비) 증감명세서 기준으로 작성
 - 연구개발비 : 재무상태표상 무형자산 개발비(당해연도 발생분 기준) + 손익계산서상 연구비 또는 경상개발비(판매비와 관리비 또는 제조경비)

3. 연구개발

- ④ 종업원수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조회를 통해 작성(각 연도 12월31일 기준)
- ⑤ 연구전담요원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작성(각 연도 12월31일 기준)
 - ※ R&D인력 작성시 연구보조원/관리직원은 제외
- ⑥ 연구전담요원 중 석박사수 : ⑤에 기재한 R&D인력 중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보유한 인력의 수를 작성(각 연도 12월31일 기준)
- ⑦ 연구개발 인력의 교육훈련 투자금액 : ⑤에 기재한 R&D인력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해 투입한 금액을 작성(각 연도 12월31일 기준)
- ⑧ 대외서비스인증실적 : 신청시점 기준, 유효한 대외 서비스관련 인증 건수를 작성
- ⑨ 정부포상(수상) 실적 : 해당연도에 신청기업이 정부로부터 수여받은 포상 건수를 작성
 - 장관상, 국무총리상, 대통령표창 및 훈포장만 포함(협회장상 등은 제외)

※ ①~⑦ 항목은 반드시 세무대리인 또는 회계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작성할 것

2. 기술(서비스)혁신 추진전략 및 역량

구분	주요내용
① 경영자 기술(서비스) 혁신 리더십	기술혁신에 대한 경영자의 의지 및 방침이 정립되어 있는지 등을 설명
② 기술(서비스)혁신 중장기전략수립	중장기(향후 3~5년) 기술개발의 세부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지와, 실현 가능성, 적절한 계획인지 여부 등을 설명
③ 개발환경 및 연구장비 보유 수준	사내 창조적 개발환경의 수준은 어떠한지를 설명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험장비 보유 현황에 대해 설명
④ 연구인력 관리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관리시스템 등을 설명 -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 및 보유를 위한 기업차원의 활동 - 연구인력 규모 및 구성의 우수성
⑤ 기술(서비스)혁신 수행능력	신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체내 기술혁신 수행 능력 등을 설명 - 연구 및 생산 시설의 보유 및 외부활용 포함(시설의 보유 및 외부활용 전략, 외부 시설의 활용체계와 성과 등)
⑥ 기술(서비스)축적 및 활용시스템	보고서, 분석자료, 사업계획서 등의 문서화/자료화 및 개발에 참여한 인력의 노하우 관리, 매뉴얼, 데이터베이스화 등의 형태로 관리 활용하는 실태 등을 설명
⑦ 기술(서비스)보호 수준	기술보안수준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정도를 설명 내부 보안관리 규정 보유(제·개정), 규정과 연계한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보안전담 조직 또는 인력 보유,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정기수행 실시 여부 등 포함
⑧ 지적재산권 경쟁력수준	기술혁신의 결과로 출원 또는 지적재산권의 경쟁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 - 보유 또는 개발기술의 우수성 및 활용 성과 등 포함
⑨ 사업화 추진역량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기술 및 품질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 등을 설명
⑩ 기술(서비스)경쟁력 및 시장경쟁력 향상도	기술혁신의 결과로 경쟁력 향상 정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등을 설명 기술혁신의 결과로 시장경쟁력 향상 정도는 어떻게 예상될지 등을 설명

3. 연구개발 개요서

- ① 핵심보유기술(서비스) 및 기술경쟁력
(작성내용은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예정 공고시에 활용 예정)

- ②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에 따른 경제적 성과내용

- ③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한 전략 및 내용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수행한 업무를 중심으로 작성)

- ④ 지난 3년간 수행한 대표적인 R&D과제
(개수 제한 없음, 정부과제 또는 자체과제도 무관, 현재 수행중인 과제도 작성 가능)

연 도	연구 과 제 명	연구 내 용	연구개발비 (백만원)	관련 제품	관련 매출액 (백만원)

4. 대표이사 및 핵심연구인력

대표이사 주요 경력	■ ■ ■ ■		
핵심연구인력 약력(4명 이내)			
	■ ■ ■ ■		■ ■ ■ ■
	■ ■ ■ ■		

5. 대표 제품(기재할 제품이 많을 시 표를 추가하여 작성)

1	제품명		품목구분		
	출시일		년 매출액		
	제품 경쟁력 및 장점	■ ■ ■ ■ ■ ■ ■			제품사진

6. 산업재산권 등록 현황

구 분	명 칭	발명자	국 명	등록일	등록번호	공동출원 기 관

※ 해당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반드시 첨부

7. 정부부처 포상 및 인증 현황

구 분	명 칭	발행처	일 자
정부포상			
정부인증			

※ 해당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반드시 첨부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서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서

지 정 번 호:

기 관 명:

대 표 자 명:

연 구 소 명:

연 구 분 야:

주 소:

위 연구소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하고,
기술을 활용한 가치창출 잠재력이 높아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합니다.

최초지정일자:

유 효 기 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자가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	
	담당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 (휴대전화)	전송		전자우편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사유	[] 분실·소실 [] 기재사항 변경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업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지정서 또는 확인서 원본(철어서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유형 선택 [] 지정예정 기업부설연구소 [] 지정제외 기업부설연구소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자가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이의신청인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	
	담당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 (휴대전화)	전송	전자우편	

신청사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사용 가능)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 1. 2.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기업 연구소 지정/지정제외와 관련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또는 기업명 및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 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 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 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 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과학 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 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① <삭 제>		
1. 연구공간				
가.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 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 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 보할 것. 다만,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 의 연구개발부서(이하 “기 업부설연구기관등”이라 한 다)로서 50 제곱미터를 초 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 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 서와 구분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
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
관등
- 2)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
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2조에 따른 벤
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
설연구기관등
- 3)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
른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
웨어개발공급업종만 해
당된다)

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
원 및 연구관리직원(이하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
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
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연구기자재를 설치한
후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
을 확보할 것

2.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
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

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
료로서 제1호의 기준에 맞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3. 부대시설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
개발활동을 위하여 제작한 구
축물과 연구전담요원등이 전
용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기숙
사 등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기업부설연구기
관등의 주소지에 있을 것(부
대시설을 두는 경우만 해당한
다)

②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제1
항의 기준에 맞는 연구시설을
확보할 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내의 연구시설을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배타적
사용 권한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 영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확보하
여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

<삭 제>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2제
1항제1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
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준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되,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에서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 6. (생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기관등과 영 별표 1의 유흥 등 관련분야를 제외한 서비스 분야(이하 “인정대상 서비스 분야”라 한다)의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다음 각 호와 같다. -----

----- 기업부설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

-----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라목-----

-----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라목-----

1.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되,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에서 제3호 및 제4호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 4. (생략)

⑤ 제3항제3호 및 제4항제3호의 전문학사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

--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라
목-----

----- 영 제16
조의2제1항제1호라목-----

---.

1. ~ 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

1. · 2.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

2. -----

나. 기업부설연구기관등----

3. (생략)

⑤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다
 목-----

<신 설>

제2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에 대한 기준) ① 영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연구공간

가.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기관등으로서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

2)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

초기업이 설립한 기업부
설연구기관등

3)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
른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
웨어개발공급업종만 해
당된다)

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
원 및 연구관리직원(이하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
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
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연구기자재를 설치한
후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
을 확보할 것

2. 연구기자재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
원이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
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및 재
료로서 제1호의 기준에 맞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3. 부대시설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
개발활동을 위하여 제작한 구
축물과 연구전담요원등이 전
용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기숙

제3조(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화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 9. (생략)

1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

사 등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주소지에 있을 것(부대시설을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제1항의 기준에 맞는 연구시설을 확보할 때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내의 연구시설을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배타적 사용 권한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3조(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 등)

① -----

-----.

1. ~ 9. (현행과 같음)

10. -----

른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
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
관만 해당한다)

11. (생략)

12. 영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임을 증명
하는 서류(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한다)

13.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임을 증명
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첨부
한다)

14.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직원
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
명하는 서류(국민연금·국민
건강보험·고용보험 또는 산

-- 해당하며, 신청인이 「전
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하여 벤처기업확인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한다---

11. (현행과 같음)

12.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제
라목-----

13.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제
가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임
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
만 첨부하며, 신청인이 「전자
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중소기업확인서 확인에 동
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한
다)

<삭제>

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말한다)

②·③ (생략)

제4조(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에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첨부한다)

5.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직원이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말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 등) ① -----

----- 제4호 및 제13호 -----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5조(변경신고) ① (생략)

<신 설>

제5조(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제8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6 제1항 및 영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제3항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의 우수 기

업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 등을 갖추어 영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기업이 여러 개의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동일 회차에는 주업종을 연구하는 한 개의 기업부설연구소만 지정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1. 제3항의 공고에 따른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만 3년 이상 연속 운영하고 있는 기업

2. 제3항의 공고에 따른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받지 않았거나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유효기간 만료가 6개월 이내인 기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로 하여금 연 2회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의 공고를

<신 설>

<신 설>

하게 하며 필요한 경우 공고 횟수를 늘리거나 줄이게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하였으면 별지 제11호 서식의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 및 신청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심사기준 및 방법) ① 영 제16조의3제2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지정예정 공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종합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예정 공고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예정 공고를 7일 이상 실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서 재발급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 기업연구소의 지정을 받은 기업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신청하면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지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기업명, 대표자명의 변경: 지정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기타 기업명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기업 간의 합병 또는 양수도계약서 등
2. 기업부설연구소의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 : 지정서 원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3. 원본 분실 : 사유를 기재한 사실확인서

제12조(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①

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하려는 이해관계인은 제
10조에 공고된 기간 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입증자료를 첨부
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
리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과
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